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47 발의연월일: 2022. 6. 27.

발 의 자:배준영·윤창현·이태규

김용판 · 정동만 · 정우택

조명희 · 조수진 · 김예지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 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운용되기 시 작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방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안 제60조 및 제61조).
-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주는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 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연장함(안 제85조의8).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행과 같음)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 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 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 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 -----2025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 월 31일-----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2025
<u> </u>
<u>년 12 년 51 년</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 ④ ~ ⑥ (현행과 같	읖)	
제	63조(수도권 밖으로		0]
•	전하는 기업에 대한		
	등) ①		
		.202514	19
	.el 21 ol	<u> 2020 T. </u>	14
	<u>월 31일</u>	000513	10
	A)	· <u>2025년</u>	
	월 31일	<u>2025</u>	<u>5년</u>
	12월 31일		
	<u>2028년 12월 31일</u>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건설업,소비성서비스업,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저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세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00001 1001 01
<u>2028년 12월 31</u>
일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 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 3. (생략)
- ② ~ ⑦ (생 략)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저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있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u>2025년</u>	12월
<u>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